

의안번호	제 25 호
의결연월일	1998. 10. 24

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. 10. 15 예산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10. 20

다. 상정일자 : 1998. 10. 20

제66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자치행정과장 : 최봉일)

가. 개정이유

-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개정 등 정원관리가 비효율적임.
-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관리측 면에서 효율적임.

나. 주 요 콜 자

-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으로 통합 관리 (안 제2조)
-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정원의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원용)

- 본 개정조례안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세부내용의 변동시에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잡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및 토론요지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